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종사자의 음주여부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확인·검사 의무 규정 〉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7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2215672)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철도종사자의 음주여부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확인·검사 의무 규정(안 제 20조, 제21조의11, 제41조, 제69조의5, 제79조)	3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221567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Ⅲ. 검토의견

1. 철도종사자의 음주여부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확인·검사 의무 규정(안 제20조, 제21조의11, 제41조, 제69조의5, 제79조)

현행법¹⁾은 철도종사자(운전업무종사자 등)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

1)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2018. 6. 12.>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제7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²⁾에 대해서도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 제41조제3항을----- ----- ----- -----

2)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 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생략) ② ~ ⑥ (생략)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생략)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생략) <신설>	-----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1조제3항을-----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 -----. 1. 2.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및 제3항에----- -----시기·방법----- ----- -----.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1조제3항을----- ----- ----- ----- -----

현행	개정안
때 ② · ③ (생략) 제79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략)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 19. (생략) ④ · ⑤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 -- 16. ~ 1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가. 검토의견

현행 법령에 따른 음주 철도종사자에 대한 확인·검사는 검사공무원(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시·도의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고, 검사공무원은 음주측정 장비의 사용내역, 적발보고서, 혈액, 소변 등의 채취대장을 작성·보존하고 있음.³⁾

3)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551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검사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도록 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음주 철도종사자 확인·검사) ① 검사 공무원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기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중략)

한편,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와 별도로 자체 내부규정인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⁴⁾을 통해 철도종사자들의 업무 시작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⁵⁾

제13조(음주·약물측정 결과 등 보존) ① 검사 공무원은 음주·약물측정 장비를 사용한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점검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음주·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 공무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음주·약물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음주·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를 작성·보존하고,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혈액, 소변, 모발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검사 공무원은 음주·약물측정 장비의 검·교정 또는 고장수리 등이 필요하거나 음주·약물측정 장비의 사용횟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저장용량 초과 및 기타 사유로 측정 장비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제1항의 음주·약물측정 장비 사용대장 뒷면에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한국철도공사 자체규정)

제39조(음주 등의 확인) ① 음주 검사자는 음주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업무시작 전(승무적합성 검사 시, 안전교육 시행 시, 인수인계 후 등)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수행 중(운행 중 포함)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8.29.>

제41조(음주검사의 방법) ① 음주검사자는 각 소속에 준비한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음주측정 후 1시간 이내에 안전경영시스템 또는 XROIS(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 기록은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다. <개정 2024.08.29.>

제42조(음주·약물자의 조치 및 신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음주·약물의 제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24.08.29.>

1. 업무 시작 전에 음주·약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그날 해당 업무 종사 금지

나. 음주검사자는 해당사유 발생 시 소속기관의 장과 안전본부장에게 보고

다. 상습(2회 이상)음주자 : 중징계

2. 업무 중에 음주·약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그날 해당 업무 종사 금지

나. 음주검사자는 해당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과 안전본부장에게 보고

다. 음주사실이 확인된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상인 경우 : 중징계

라. 약물 검사 결과 양성인 자 : 중징계

3. 음주·약물에 대한 측정·확인을 거부한 경우

가. 그날 해당 업무 종사 금지

나. 음주검사자는 해당사유 발생 시 소속기관의 장과 안전본부장에게 보고

다. 측정·확인을 거부한 경우 : 중징계

라. 업무 중 해당사유 발생한 경우 음주검사자는 지체없이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신고

5)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운영자 또한 자체 규정을 통해 승무분야 종사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철도운영자의 자체 검사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됨에 따라 이를 거부하거나 적발되더라도 자체 경고 조치에 그치는 등 책임성 있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⁶⁾

< 한국철도공사 음주측정 자체 적발 및 징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계	66	8	10	5	3	2	12	8	18
근무 전	37	4	10	-	1	-	5	4	13
근무 중	29	4	-	5	2	2	7	4	5
형사절차 진행		0	-	-	1	1	-	-	-
징계만 진행		4	-	5	1	1	7	4	5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 음주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202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철도종사자 음주 관련 내용】

코레일 직원 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행법 제41조제1항(음주제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13명 중 코레일이 자체 적발한 11명과 철도경찰에게 적발된 2명에 대한 처벌이 상이하였음..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경우 미신고시 처벌이 곤란하며, 처벌 형량도 他 분야(도로 등)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할 것

(한국철도공사) 음주 관련 행위 및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 인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해 확인·검사 및 결과 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철도운영자등의 확인·검사를 통해 철도 종사자의 음주가 확인된 경우 철도운영자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철도 종사자의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철도운영자등은 음주 여부가 확인된 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및 제94조7)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행을 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음주를 확인했음에도 운행을 하게 한 운송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의 음주여부 확인·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 검사공무원의 확인·검사 불응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행위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확인·검사는 업무 시작 전에 검사대상 철도종사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 이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현행법상의 확인·검사와는 검사시기, 검사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⁸⁾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업무 시작 전에 모든 검사대상 철도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확인·검사에 대한 불응행위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실시하는 확인·검사에 대한 불응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8)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이에 위반되는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은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 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 벌칙조항은 공무원이 아닌 자의 확인·검사행위를 검사공무원의 행위에 준하여 취급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의 음주여부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조항⁹⁾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타 운송수단 입법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철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확인 또는 검사를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업무 전 음주 여부 확인 또는 검사 불응 시 철도운영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¹⁰⁾되므로 음주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9) 유사 입법례로는 「도로법」을 참고할 수 있음.

「도로법」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0) (한국철도공사) 승무중지 및 중징계 / (서울교통공사) 승무중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1

타 운송수단의 업무 전 음주 여부 확인 및 결과 기록 관련 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⑪ (생략)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의2 (생략)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번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과 기록의 보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